

·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

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

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에너지산업 육성 및 지원 추진 사업외 1 건인

190,964,100 원으로서

- 명시이월 (2 건) 190,964,100 원
- 사고이월 (0 건) 0 원
- 계속비이월 (0 건) 0 원이며

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.